



**Department of  
Education**

Chancellor Richard A. Carranza

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:

귀 자녀는 재활법 504항에 따라 학교에서 보건 서비스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서비스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의료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투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청력이나 시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칠판 가까이 자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.

**자녀가 서비스 또는 편의제공 대상인지 알아보시는 방법:**

1. 담당자:

- 자녀의 학교장 또는
- Neil Somerfeld 이메일 [504questions@schools.nyc.gov](mailto:504questions@schools.nyc.gov). 자녀의 이름, 학교, 학급을 알려주십시오.

자녀의 상태 및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.

2. 학교장은 귀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.

3. 신청이 접수되면, 자녀의 학교에서는 서비스 요청 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. 학교 504 팀에서는 귀 자녀의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에 귀하를 초청할 것입니다. 이 회의에서 팀은 귀 자녀에게 서비스나 편의가 제공될지 결정합니다. 귀하께는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.

본 안내문에 귀 자녀의 권리를 상세히 설명한 504 FAQ를 첨부하였으니 읽어 보십시오. 질문이 있으시면 학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[504questions@schools.nyc.gov](mailto:504questions@schools.nyc.gov)로 이메일 하십시오.

감사합니다.